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96

발의연월일: 2020. 7. 7.

발 의 자:박 정·이상헌·유정주

전용기 · 임오경 · 홍정민

김철민 • 안민석 • 이원욱

김승원 • 이상직 • 이병훈

이용선 · 서삼석 · 황 희

문진석 • 양기대 • 황운하

임호선 · 이규민 · 김남국

도종환 의원(22인)

제안이유

최근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가 체육계 폭력사태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함. 고 최숙현 선수는 지난 4월 대한체육회 클린센터 등에 폭력사태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센터는 이의 조사를 미루다 결국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음.

또한 고 최숙현 선수에게 결정적인 폭력을 행사한 소위 팀닥터의 경우는 규정에도 없는 직책으로 징계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상식적 상황이 연출되었음.

이런 상황이 발생한 데에는 현재의 법률에 조사기간이 명시되어 있

지 않고,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하고, 또한 소위 팀닥터라는 정체불명의 선수관리담당자가 운영되어 온 원인이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조사기간과 조사방법을 명확히 하고, 선수관리담당자 (소위 팀닥터)를 등록하도록 하며, 이들에 대한 의무적인 (성)폭력 교 육을 의무화 하고자 하는 것임. 또한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의 조치도 강화하려고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함(안 제18조의6제2항 신설).
- 나. 스포츠윤리센터는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2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고, 이 조사에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함(안 제18조의9 신설).
- 다.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고,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등의 우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8조의10 신설).
- 라.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관리담당자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함(안 제18조의11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6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내용 및 방법, 대상, 기간"을 "내용, 방법, 대상, 기간 및 제2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, 방법"으로 한다.

②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지도자 및 제18조의11에 따른 선수관 리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.

제2장의2에 제18조의9부터 제18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8조의9(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등)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3 제3항제1호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경우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조사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, 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조사에 성실히 임

하여야야 한다.

-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.
- 1. 진정인·피해자·피진정인(이하 "당사자"라 한다)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,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
- 2. 당사자,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
- 3.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,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
-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8조의10(신고자의 보호) ①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고, 관련 규정에 따라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등의 우선 조치를 할 것을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.
 - ②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,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18조의11(선수관리담당자의 신고의무) ①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해 선수관리담당자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회원 종목단체 또는 시·도체육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선수관리담당자의 구체적 자격요건, 범위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|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6(성폭력 등 폭력 예방 제18조의6(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) ① (현행과 같음) 교육의 실시) ① (생 략) <신 설> ②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 지도자 및 제18조의11에 따른 선수관리담당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 육을 받아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 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, -------내용. 방법. 대 대상,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상, 기간 및 제2항에 따른 성폭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 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, <신 설> 제18조의9(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등)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 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조사 를 실시할 경우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조사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

하고 조치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, 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야 한다.
-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.
- 진정인・피해자・피진정인
 (이하 "당사자"라 한다) 또는
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, 진
 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
 구
- 2. 당사자,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 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
- 3.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, 시설 또는 자 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
-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18조의10(신고자의 보호) ① 스 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신고인과 피신 고인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 고, 관련 규정에 따라 피신고인 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등 의 우선 조치를 할 것을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.

②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피 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 하여 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 지하거나,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8조의11(선수관리담당자의 신 고의무) ①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해 선수관리담당자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·도체육회에 신고하여야 한 다.

② 제1항의 선수관리담당자의 구체적 자격요건, 범위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
<u><신</u> 설>